

#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963,173	8,188,895
일반회계	227,351,096	6,820,533
특별회계	45,612,077	1,368,362
공기업특별회계	11,989,334	359,6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989,334	359,680
기타특별회계	33,622,743	1,008,682
주택사업특별회계	30,930	92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1,000	6,030
의료보호특별회계	666,354	19,99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730,000	51,900
장학사업특별회계	6,417,500	192,5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78,313	62,349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4,000	24,120
수질개선특별회계	21,694,646	650,8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사업) "해 당 없 음"

제 6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34,508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820,533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위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